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의 견

2014. 11.

[사]오픈넷



I.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자의 피해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136조제1항제1호).¹⁾

1) 안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제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저작물등의 복제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

II. 오픈넷 검토의견

1. 저작권 침해행위 형사처벌 현황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가 가장 많은 나라이나, 고소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건이 0.1%를 넘은 적이 없음(별첨 1 관련 통계 참조).
 - 고소 남발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무려 90,979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불과 8건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되었고 구약식도 접수 건의 4.4%에 지나지 않았으며(3,983건), 나머지 약 96%는 불기소 처분되었음.²⁾
 - 미국에서는 수사 의뢰 건수가 한 해에 100 건 내외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에서 50~70% 정도가 기소되고 대부분 유죄가 인정됨.

[미국 저작권 침해죄 형사사건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수사 의뢰 건수 (명)	79 (118)	132 (174)	82 (118)
기소 건수 (명)	58 (75)	74 (83)	46 (70)
종결 건수 (명)	85 (103)	84 (95)	48 (64)

[미국 저작권 침해죄 종결 사건 피고인별 세부 결과]

구분	2009	2010	2011
유죄인정	81	84	42
유죄판결	2	1	2
공소기각	17	8	18
무죄판결	0	0	1
기타	3	2	1

출처: 김현철, 『미국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얼마나 될까』, 저작권동향 제1호, 2012. 2. 3.

2) 고소건의 90% 이상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없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는 매우 경미한 침해라는 점을 보여줌. 특히 불기소 사유 가운데 ‘공소권 없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 내지 고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저작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임.

- 권리자들과 일부 범무법인은 친고죄인 점을 악용해, 침해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후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침해된 저작물의 가액 대비 수십배, 수천배의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강요함.

※ 미성년자 K양이 만화 한 편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 요리 사진 한 장을 웹 사이트 제작에 이용했다고 정품 가격의 약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한 사례 등(별첨 2 “합의금 장사” 사례 참조).

- 2007년 11월에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소설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자살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 이러한 합의금 장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권리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불법에 가까운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2014. 11. 13.자 조선일보 A12면(별첨 2 참조)]

‘告訴 당할래, 제품 살래’ 내용증명 폭탄 영세업체 몰아매는 로펌 ‘著作権 장사’

(저작권)

처벌 완화 개정안 통과 앞두고 합의금 쟁기러 업체들 압박

인터넷에 업해 다니는 A씨는 지난 3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한 범 무법인(로펌) 이보낸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A씨 회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은 폰트(글꼴) 2개를 이용해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홍보하는 영세 업체다. 로펌 측은 여기에 사용된 폰트를 문제 삼으며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진다’ 3일 이내에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깜짝 놀란 A씨는 로펌에 전화를 걸었다. 로펌 담당자는 “400여개 폰트가 들어 있는 99만원짜리 패키지를 사라. 아니면 형사 고소와 함께 300만원 정도를 물어야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협박조로 말했다. ‘고소’ ‘소송’ 이야기에 놀란 A씨는 인터넷에 관련 사례를 검색해봤다. 지난달 말부터 같은 로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됐다.

권리 개정안을 앞두고 일부 로펌이 막비지 저작권 대리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백~수천 건의 내용증명을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 폰트·이미지·음원·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다운 받은 사람 중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십만~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프로그램·패키지 구매를 종용하는 것이다.

로펌들의 저작권 사냥이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진 이유가 있다. 지난 4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자 ‘개정안이 내년 초에 통과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중·소형 로펌들이 ‘연말 막판 영입’에 나섰다. 이야기가 많다.

현행 저작권법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처벌이라는 말에 아연실색한 일반인들은 로펌 측이 합의금을 수백만원씩 불러도 그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저작자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

의 피해를 보았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소한 저작권 위반 행위를 사냥해 왔던 일부 로펌은 더 이상 이를 이용해 돈을 벌 수가 없게 된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부 로펌의 무차별적인 ‘저작권 장사’를 막기 위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작권 장사가 더욱 심각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내용증명 폭탄’ 때문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로펌 측에 넘겨주고 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영세업체 관계자나 인터넷에서 각종 과일을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이 많다. 음시점을 운영하던 B씨는 “무료라고 해서 폰트를 다운받아 썼는데, 갑자기 고소를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손이 떨려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며 “검찰·법원을 들락날락하니 차라리 비싼 공부했다고 치고 99만원짜리 패키지를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인 블로그에 무료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100만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은 대학생 C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정위 답변을 받기도 전에 계속 시달리다가 로펌에 돈을 보냈다. 로펌들은 합의에 실패하면 실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로펌 측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합의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단체 오픈넷의 남희철 씨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실수를 변호사가 몰고 놓아주는 이상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저작권 위반을 막기 위한 목적이지 아니더라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로펌들을 ‘권리남용’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저작권 침해라면 검찰도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많다”며 “로펌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에는 강경하게 맞서고, 패키지 등을 강매하려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前검찰총장, 골프장 직원 성추행 혐의 被訴

2. 현행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조항의 문제점

- 현행 저작권법은 침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선량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음.
 -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건수는 2011년 4,577명에서 2012년 6,074명으로 32.7% 증가하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고소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정부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또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기소유예나 고소 각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권리자들은 처분결과를 근거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음.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구제수단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형사고소가 합의금 장사의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가장 큰 형사처벌이 손해전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형벌의 최후수단성에 반함.
 - 또한 합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나 사회경제적 약자는 형사처벌과 전과경력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³⁾
- 사법당국의 노력과 국민의 세금이 더 심각한 범죄 수사에 사용되지 못하고 개별 권리자의 사익 추구에 낭비되고 있음.
 - 노래 1곡을 다운로드 받거나, 사진 1장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들까지 인지가 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데, 권리자들이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여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 탁희성,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8면.

3.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

- 저작권 침해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고려됨.
 - ① 피해액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죄의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대안),
 - ② 구체적인 피해액을 법률에 명시하는 대신 추상적인 문구로 침해죄의 대상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⁴⁾
 - ③ 형벌의 차등화(영리·비영리로 구분한 차등화(비영리인 경우 현행법보다 형량을 줄이고, 영리인 경우 가중처벌), 피해가액에 따른 차등화 등)⁵⁾ 방안.
- ②와 같이 추상적인 문구로 침해죄의 대상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축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저작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해석하는 현재 사법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방안 ①이 더 타당해 보임. ③도 훌륭하나, 침해행위의 목적에 따른 형벌의 차등화보다는 피해가액과 같은 객관적이고 단순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저작권 제도는 권리 발생에 있어서 무방식주의를 채용하고 저작권 발생을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도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보다는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민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게 해야 함.

4) “상업적 목적(우리법상 대응하는 표현으로는 영리목적)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반이용자의 행위(가령 인터넷 개인블로그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136조 제1항과 달리 장래의 입법에서는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 한정 방법으로는 앞서 본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 (a)(1)(B)에서와 같이 침해 기간·침해가액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미국 형사법 일반의 고유한 특색에 따른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로 처벌대상을 한정하도록 하고 우리 법원으로 하여금 그 문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서 입법시 고려될 수 있는 추상적인 문구로는 한국이 이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라는 표현 혹은 우리와 거의 동일하게 합의한 내용을 호주나 싱가포르가 자국법으로 수용하면서 채용한, 저작권자에게 미칠 상당한 악영향(substantial prejudicial impact)이란 표현 등이 있다(관련부분 - 보고서 III. 1. 나. (1), (2) 부분). 덧붙여, 미국은 복제, 배포(한국의 경우는 전송도 포함됨)에 대하여만 처벌을 가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침해에만 형사처벌의 위력을 더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정상조,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65면.

5) 탁희성, 2009.

4. 결론

- 현행법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 의한 합의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 대안에서 제안이유로 열거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고소남발, 청소년 피해자 양산과 같은 문제점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입법부 및 행정부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국회에서 지금까지 7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취지는 모두 고소고발 남용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음.
- 학계에서도 현행 저작권침해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형벌의 예방적 위화 효과가 없고 민사로 해결가능한 경미한 침해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집중되어 오히려 법의 경시, 형벌의 위하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거나(탁희성, 2009),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를 지적함(정상조, 2009).
 - ※ 지난 8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경향신문에 대안에 대한 지지 칼럼을 기고한 바 있음(별첨 3 정상조 교수 경향 기고 참조)

위와 같은 고려들을 잘 반영한 동 대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하는 바임.

III.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1.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개정안은 피해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매우 낮은 편으로, 상습범의 경우는 대부분 해당하게 될 것임.
 - 또한 개정안은 가.목에서 영리 목적인 경우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헤비업로더와 같은 대부분의 상습적인 침해행위에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비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 해도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이 현저히 낮음.
 - 예컨대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자 개인블로그에 저작물을 수 차례 올린 청소년을 상업적 규모로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는 업체들과 같이 취급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음.
 - 또한 최근에는 영리의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고소당하고 있는 현실임(별첨 2 참조).
-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이하 교문위) 회의에서 전문위원은 영리 목적이 아닌 일정규모 이하의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교문위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음.⁶⁾

6) 제324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 제1차(2014년4월23일) 회의록 참고

2. 기산점이 불명확하고 소매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언제를 기준으로 6개월의 기간을 특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형벌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특히, 저작물등의 복제물의 소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소매가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대안은 미국의 저작권법 제506조를 참고한 것임.

- 아래 표에서 보듯 저작권 보호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형사처벌의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안과 유사한 (a)(1)(B)항은 중죄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안에 비해 훨씬 처벌이 가벼움(별첨 3 미국 형사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참조).

[미국 저작권 침해죄 처벌조항]

저작권법 제506조 침해행위	형법 제2319조		
	죄의 종류	요건	처벌
(a)(1)(A) 상업적 이득 또는 사적 재산적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	경죄 (Misdemeanor)	중죄와 누범을 제외한 모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
	중죄 (felony)	180일 동안 총 소매 가치 \$2,500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
	누범	중죄 + 2회 이상 또 는 연속범	10년 이하 징역 또 는 벌금(병과 가능)
(a)(1)(B) 180일 동안 총 소매 가치 \$1,000 이상	경죄 (Misdemeanor)	중죄와 누범을 제외한 모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
	중죄 (felony)	총 소매가치 \$2,500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
	누범	중죄 + 2회 이상 또 는 연속범	6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

- 미국의 저작권법도 180일이라는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간이 특정된 이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6개월은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법률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가령 침해행위를 1회 했는데 침해 당시의 소비자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령 저작권자가 프로모션을 하여) 피해규모가 너무 낮게 산정되는 불합리를 예상할 수 있음. 그리고 소비자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산정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거나(가령 1주일) 지나치게 길게 잡는(가령 10년)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명확성 원칙에 부합함.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기준(가령 ‘지식재산 범죄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과 대검찰청의 구형 지침 등에서 명확히 하면 됨.
- 또한 기산점을 명문의 규정으로 정한다면 사법당국의 해석 여지를 매우 좁히게 되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침해양상을 적절히 규제하기 어려울 것임.
- 전문위원은 소매가격을 처벌기준으로 하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나, 소매가격은 다른 법에서도 처벌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⁷⁾ 식품위생법⁸⁾ 등).

7)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8) 제93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 저작물 등 복제물의 소매가격의 정확한 산정은 얼마든지 가능함.

- 특히 미국에서는 판례와 지침⁹⁾ 등으로 다양한 소매가격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별첨 3 참조).

※ **U.S. v. Armstead¹⁰⁾** : 피고인 Armstead는 개봉 전인 영화의 불법 DVD를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복제품의 매출액으로 계산했을 때 침해품의 가치가 총 \$1,000 이상이 되지 않아 중죄(felon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매가치”라 함은 피고인이 침해행위를 했을 당시 저작물의 액면가(face value), 정가(par value), 또는 시가(market value) 중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 대안은 총 소매가격이 아닌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저작권자에게 훨씬 유리하며, 저작권단체들은 피해액 산정을 매우 정확하게 해오고 있음.

-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매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¹¹⁾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 피해액은 원 단위까지 계산이 가능함.

[2014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144면]

표IV-24 |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구분	2012년		2013년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음악	513,702,677,333원 88.0%	70,276,683,794원 12.0%	498,027,999,522원 81.7%	111,755,517,161원 18.3%
영화	604,009,800,245원 91.9%	53,522,470,123원 8.1%	710,697,636,395원 91.9%	62,287,248,214원 8.1%
방송	147,122,375,923원 92.3%	12,240,667,923원 7.7%	163,431,020,025원 92.8%	12,613,010,630원 7.2%
출판	187,865,279,286원 63.1%	109,889,893,747원 36.9%	233,108,610,538원 72.6%	88,138,619,164원 27.4%
게임	366,985,065,194원 70.6%	152,935,281,227원 29.4%	351,290,756,744원 67.7%	167,307,078,038원 32.3%
합계	1,819,685,197,981원 82.0%	398,864,996,814원 18.0%	1,956,556,023,224원 81.6%	442,101,473,207원 18.4%

9) 지식재산권범죄 기소 매뉴얼(Prosecuting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2013 양형기준(2013 Guideline Manual) 등

10) U.S. v. Armstead, 524 f.3d 422 (4th Cir. 2008)

11)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report.php>

3. 처벌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처벌 기준이 되는 “6개월”과 “100만원 이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동 기준 한도 내에서는 타인의 재산적 권리 침해행위를 법에서 허용하게 됨으로써 100만원 이하의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범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앞서 보았듯 처벌 기준은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데, 저작권 보호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러한 형사처벌제도가 몇십년간 잘 운용되어 왔음을 보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기소된 사건 중 1.2% 정도가 해당되어 크게 무리가 없고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¹²⁾
 - 해당 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가이며 이해관계가 큰 담당 부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행정적 구제수단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행위의 급증이나 범의식의 저하란 결과는 상정하기 어려움.
 - 민사적 제재: 침해금지청구(침해물 또는 침해행위에 사용된 도구, 재료 등의 폐기 청구도 가능), 실시료 상당액 등 손해배상 청구, 손해와 손해액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도 없는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12) 제324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 제1차(2014년4월23일) 회의록 참고

- 행정적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지 및 삭제 권한(저작권법 제13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 명령(이용자 삼진아웃제, 게시판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 부과(저작권법 제10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접속 차단, 웹하드 등록제(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한미 FTA 협정 - 웹하드 사이트를 차단하는 부속서한.
- 또한 국민 일반의 법의식에 대해 오히려 학자들은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남발로 인한 법의 경시, 형벌의 위하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거나,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를 지적해왔음.

4. 법체계상 이례적이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경우, 피해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침해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의 침해행위와 소액 상습범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체계상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허법은 산업적 규모의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함.¹³⁾
 - 대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다른 법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관련 법률을 잘못 이해한 주장임.
- 또한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후 행정처분(등록결정)이 있어야 발생하는 권리이지만, 저작권은 창작이란 사실행위만으로 발생하고 창작성의 요건도 매우 낮기 때문에, 형사처벌 요건을 달리한다고 하여 이례적이라 볼 수 없음.

13)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5.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현행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또는 상습 등 비교적 중대한 권리침해 행위가 아닌 ‘단지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정의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조치로 보여짐.”

- 영리 목적의 경우는 대안에서도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안의 처벌 기준에 해당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중대한 권리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친고죄의 범위가 거의 달라지지 않음.
- 그리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비친고죄로 한 것은 한미 FTA 제18.10조 제27항14)을 반영한 것임.¹⁵⁾

14) 제18.10조 제27항 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15) 제324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 제1차(2014년4월23일) 회의록 참고

별첨 1

관련 통계

■ 저작권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출처: 대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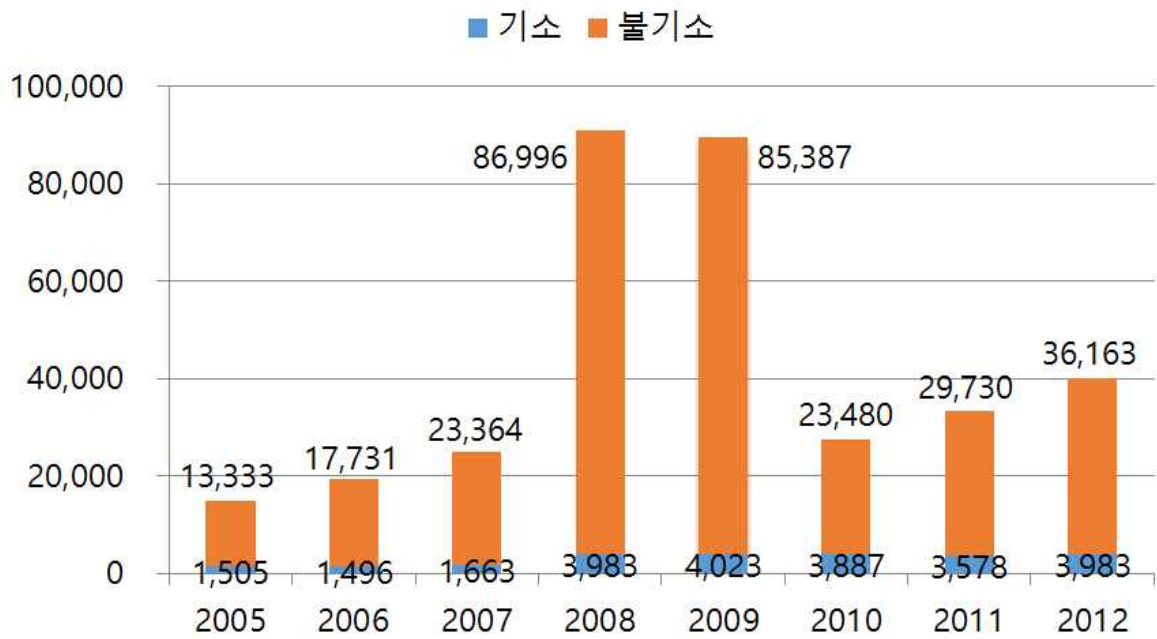
[기소/불기소 비율(건수)]

연도	사건접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소계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타	소계
2005	14,838 (290)	19 (0)	1,486 (19)	1,505 (19)	1,013 (19)	9,481 (155)	215 (33)	2,624 (64)	13,333 (271)
2006	18,227 (611)	23 (0)	1,473 (31)	1,496 (31)	1,445 (20)	11,426 (389)	1,865 (118)	1,995 (53)	16,731 (580)
2007	25,027 (2,832)	26 (0)	1,637 (76)	1,663 (76)	3,836 (313)	15,195 (1,865)	1,986 (376)	2,347 (199)	23,364 (2,753)
2008	90,979 (21,953)	8 (0)	3,975 (118)	3,983 (118)	12,446 (1,575)	51,255 (11,855)	16,520 (6,056)	6,775 (2,349)	86,996 (21,835)
2009	89,410 (22,169)	67 (0)	3,956 (17)	4,023 (17)	24,702 (13,707)	27,150 (2,936)	24,676 (4,243)	8,859 (1,266)	85,387 (22,152)
2010	29,307 (3,611)	147 (0)	3,740 (3)	3,887 (3)	5,447 (3,201)	10,829 (152)	5,102 (150)	2,102 (81)	23,480 (3,584)
2011	36,852 (4,577)	234 (0)	3,344 (5)	3,578 (5)	6,996 (5,354)	14,244 (199)	6,196 (253)	2,294 (58)	29,730 (5,864)
2012	46,359 (6,070)	173 (1)	3,810 (16)	3,983 (17)	11,097 (5,354)	14,356 (271)	7,594 (287)	3,116 (64)	36,163 (5,976)
2013	36,879 (2,860)	135 (0)	3,125 (5)	3,260 (5)	6,513 (2,477)	12,744 (176)	7,565 (147)	3,019 (35)	29,841 (2,835)
합계	387,878	833	26,836	27,669	105,515	184,678	83,382	37,300	410,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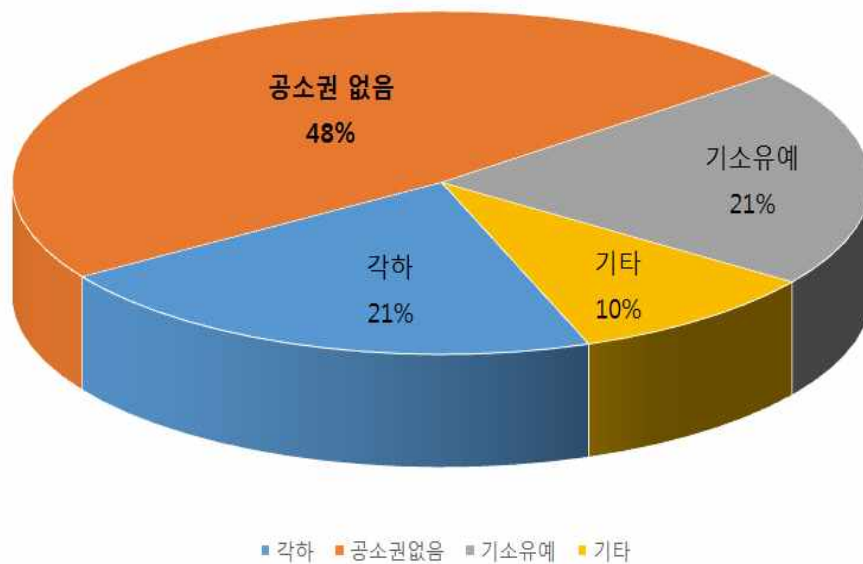
■ 기소율

- 저작권법 위반 사범 기소율 평균(2005년~2013년): 7.35%
- 저작권법 위반 사범 구공판 평균(2005년~2013년): 0.22%
- 경제사범 기소율 평균(2009~2013): 23.7%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3.22배)
- 경제사범 구공판 평균(2009~2013): 7.27%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3,304배**)
- 2008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약 10만건(90,970건)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8건에 불과함.
- 전체 고소사건 중 겨우 4.4%에 해당하는 3,975건만 약식재판에 넘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었음.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이 1%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음.

[기소/불기소 비율(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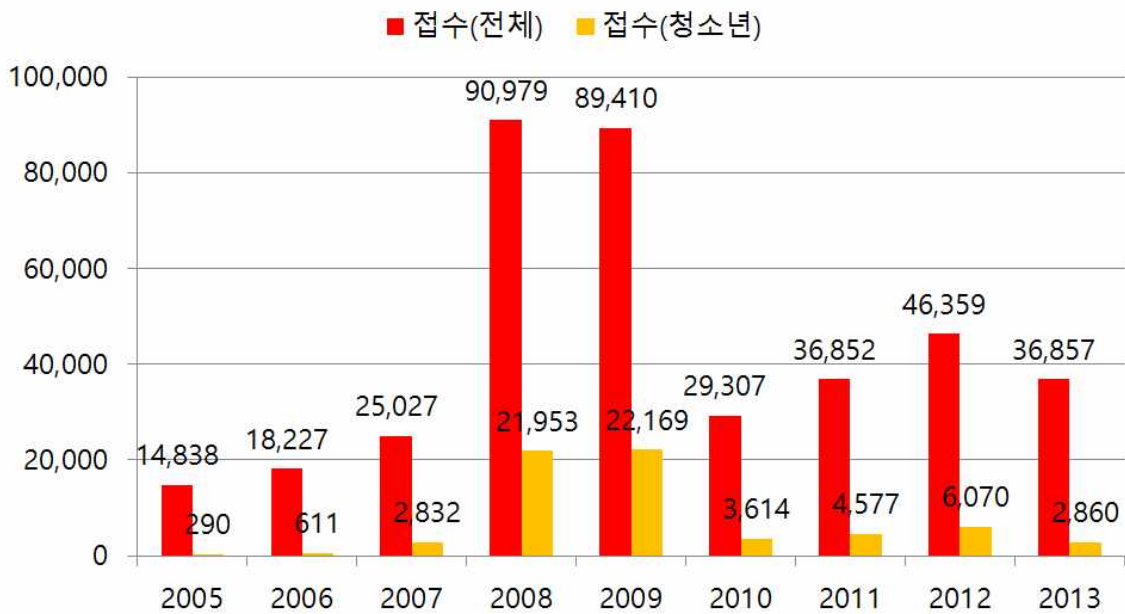
[불기소 내역(전체)]



■ 청소년

- 대검찰청의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13만 4992명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는 무려 15%로 2만 272명.
- 총 범죄 중 미성년 피의자율은 6%이지만,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3%(부모 인적사항으로 기입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은 5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저작권 위원회의 견해라고 함¹⁶⁾).

[청소년 비율(건수)]



16) 디지털타임즈, 한민옥 기자

| 입력: 2009-12-07 21: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20802010351699001

별첨 2

“합의금 장사” 사례

■ 만화

K양은 미성년자이던 2012. 2.경(만19세)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B를 다운로드받은 후 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음. 저작권자가 K양을 고소하여 K양은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법률대리인의 사무직원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요구. 아직 고소되지 않은 소설 3건이 더 있으니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면 약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

■ 사진

웹사이트 디자인 업체인 B사는 비영리 단체의 홈 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사진 한장을 사용하였음. 이 사진은 회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있던 요리(봄 나물) 사진이었는데, 저작권자는 합의금으로 100만원 요구. 당사 저작권자는 이 사진이 포함된 약 4,000장의 사진 전집을 27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었음(정품 가격의 1,48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함 셈).

■ 이미지

비영리 평화단체 J의 행사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자는 정품 가격의 4배인 25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단체 J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 종결. 당시 저작권 행세를 하던 자는 경찰 조사를 받음(권리없이 합의금 장사로 그 동안 약 100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

■ 글꼴(폰트) 저작권

글꼴은 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있는데, 권리자들은 결과물(웹사이트, 로고, 간판)에 권리 주장을 하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요구. 이를 보다 못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3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안내서 제작·배포.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 카페에서 구매한 대학생 K는 강의내용이 자기와 맞지 않아 중고로 팔았음. 학원은 K에게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공학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소매 가격을 약 3억원으로 갑자기 3배 인상. 저작권자는 법무법인과 합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 걸린 기업 P와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약 10억원 요구. 결국 기업 대표는 무혐의, 법인은 벌금 100만원으로 종결.

2014.11.13.일자 조선일보 A12면



“告訴 당할래, 제품 살래” 내용증명 폭탄

영세업체 옳아매는 로펌 ‘著作權 장사’

(저작권)

처벌 완화 개정안 통과 앞두고
합의금 챙기려 업체들 협박

인테리어 업체에 다니는 A씨는 지난 3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한 법 무법인(로펌) 이보낸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A씨 회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은 폰트(글꼴) 2개를 이용해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홍보하는 영세 업체다. 로펌 측은 여기에 사용된 폰트를 문제 삼으며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진다’ ‘3일 이내에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깜짝 놀란 A씨는 로펌에 전화를 걸었다. 로펌 담당자는 “400여개 폰트가 들어 있는 99만원짜리 패키지를 사라. 아니면 형사 고소와 함께 300만원 정도를 물어야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협박조로 말했다. ‘고소’ ‘소송’ 이야기에 놀란 A씨는 인터넷에 관련 사례를 검색해봤다. 지난달 말부터 같은 로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됐다.

‘저작권 사냥’을 막기 위한 저작

권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로펌이 막바지 저작권 대리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백~수천 건의 내용증명을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 폰트·이미지·음원·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다운받은 사람 중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십만~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프로그램·패키지 구매를 종용하는 것이다.

로펌들의 저작권 사냥이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진 이유가 있다. 지난 4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자 ‘개정안이 내년 초에 통과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중·소형 로펌들이 ‘연말 막판 영업’에 나섰다. 이 이야기가 많다.

현행 저작권법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처벌이라는 말에 아연실색한 일반인들은 로펌 측이 합의금을 수백만원씩 불러도 그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저작권자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

의 피해를 보았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소한 저작권 위반 행위를 사냥해 왔던 일부 로펌은 더 이상 이를 이용해 돈을 벌 수가 없게 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부 로펌의 무차별적인 ‘저작권 장사’를 막기 위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작권 장사가 더욱 심각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내용증명 폭탄’ 때문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로펌 측에 넘겨주고 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영세업체 관계자들이나 인터넷에서 각종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청소년이 많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무료라고 해서 폰트를 다운받아 썼는데, 갑자기 고소를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손이 떨려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며 “검찰·법원을 들락날락하느니 차라리 비싼 공부했다고 치고 99만원짜리 패키지를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인 블로그에 무료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100만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은 대학생 C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정위 답변을 받기도 전에 계속 시달리다가 로펌에 돈을 보냈다. 로펌들은 합의에 실패하면 실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로펌 측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합의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단체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실수를 변호사가 몰고 늘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저작권 위반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뜯어 내려는 로펌들을 ‘권리남용’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저작권 침해라면 검찰도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많다”며 “로펌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에는 강경하게 맞서고, 패키지 등을 강매하려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연진 기자



[기고]포용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저작권법은 사소한 저작권 침해가 있어도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경미한 실수에 대해 형사고소가 남발되고 과도한 합의금이 강요되는 폐해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 교문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6개월간 침해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 작업은 수만명의 청소년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시정하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개정안은 관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상에서 음악 등 콘텐츠를 감상하는 주된 소비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형사처벌은 저작물의 주요 소비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오히려 저작권 시장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의 완화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단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고, 온라인 유통업자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순환의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보호의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을 보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수십억원을 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단복제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현실

적으로 형사처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규모나 사건 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형사고소나 형사처벌은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범죄자를 마구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의 차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온라인 음악 유통을 시작한 소리바다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유사한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냅스터(Napster)’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가 제기된 바 없고, 오직 민사사건에서 냅스터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된 바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도 엄격하지만 그 해석과 운용도 아주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저작물 이용과 온라인 유통사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반문이 제기되어 왔다.

요컨대 저작권 침해를 모두 형사적으로 처벌하려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협에 의해서만 법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진적인 사고방식의 결과이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 의해 생기는 반감은 오히려 저작권법의 집행을 방해할 뿐이다. 특히 미래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우리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정보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킨다. 인터넷 시대의 죄와 벌은 명확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용될 때에만 행위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형사처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 그리고 온라인 유통사업자 모두 상생하고 문화산업이 발전하게 되길 바란다.

<정상조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별첨 4 미국 형사처벌 규정 및 양형 기준

■ 법률 규정

○ 저작권법 제506조, 형법 제2319조

17 U.S. Code § 506 - Criminal offenses

(a) Criminal Infringement.—

(1) In general.— Any person who willfully infringes a copyright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under section 2319 of title 18, if the infringement was committed—

(A)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or private financial gain;

(B) by th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including by electronic means, during any 180 - day period, of 1 or more copies or phonorecords of 1 or more copyrighted works, which have a total retail value of more than \$1,000; or

(C) by the distribution of a work being prepared for commercial distribution, by making it available on a computer network accessible to members of the public, if such person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the work was intended for commercial distribution.

18 U.S. Code § 2319 - Criminal infringement of a copyright

(a) Any person who violates section 506 (a) (relating to criminal offenses) of title 17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ubsections (b), (c), and (d) and such penalties shall be in addition to any other provisions of title 17 or any other law.

(b)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se under section 506 (a)(1)(A) of title 17—

(1)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fined in the amount set forth in this title, or both, if the offense consists of th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including by electronic means, during any 180-day period, of at least 10 copies or phonorecords, of 1 or more copyrighted works, which have a total retail value of more than \$2,500;

(2)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10 years, or fined in the amount set forth in this title, or both, if the offense is a felony and is a second or subsequent offense under subsection (a); and

(3)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1 year, or fined in the amount set forth in this title, or both, in any other case.

(c)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se under section 506 (a)(1)(B) of title 17—

(1)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3 years, or fined in the amount set forth in this title, or both, if the offense consists of th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10 or more copies or phonorecords of 1 or more copyrighted works, which have a total retail value of \$2,500 or more;

(2)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6 years, or fined in the amount set forth in this title, or both, if the offense is a felony and is a second or subsequent offense under subsection (a); and

(3)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1 year, or fined in the amount set forth in this title, or both, if the offense consists of th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1 or more copies or phonorecords of 1 or more copyrighted works, which have a total retail value of more than \$1,000.

- 미국 양형기준 (http://isb.ussc.gov/Manual_HTML/2b5_3.htm)

§2B5.3. Criminal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Trademark

2.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Amount.—This note applies to the determination of the infringement amount for purposes of subsection (b)(1).

(A) Use of Retail Value of Infringed Item.—The infringement amount is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ed item, multiplied by the number of infringing items, in a case involving any of the following:

- (i) The infringing item (I) is, or appears to a reasonably informed purchaser to be, identical or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infringed item; or (II) is a digital or electronic reproduction of the infringed item.
- (ii) The retail price of the infringing item is not less than 75% of the retail price of the infringed item.
- (iii)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ing item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determine without unduly complicating or prolonging the sentencing proceeding.
- (iv) The offense involves the illegal interception of a satellite cable transmission in violation of 18 U.S.C. § 2511. (In a case involving such an offense,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ed item" is the price the user of the transmission would have paid to lawfully receive that transmission, and the "infringed item" is the satellite transmission rather than the intercepting device.)
- (v)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ed item provides a more accurate assessment of the pecuniary harm to the copyright or trademark owner than does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ing item.

(vi) The offense involves the display, performance, publication,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a work being prepared for commercial distribution. In a case involving such an offense,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ed item" is the value of that item upon its initial commercial distribution.

(vii) A case under 18 U.S.C. § 2318 or § 2320 that involves a counterfeit label, patch, sticker, wrapper, badge, emblem, medallion, charm, box, container, can, case, hangtag, documentation, or packaging of any type or nature (I) that has not been affixed to, or does not enclose or accompany a good or service; and (II) which, had it been so used, would appear to a reasonably informed purchaser to be affixed to, enclosing or accompanying an identifiable, genuine good or service. In such a case, the "infringed item" is the identifiable, genuine good or service.

(viii) A case under 17 U.S.C. §§ 1201 and 1204 in which the defendant used a circumvention device. In such an offense,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ed item" is the price the user would have paid to access lawfully the copyrighted work, and the "infringed item" is the accessed work.

(B) Use of Retail Value of Infringing Item.—The infringement amount is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ing item, multiplied by the number of infringing items, in any case not covered by subdivision (A) of this Application Note, including a case involving the unlawful recording of a musical performance in violation of 18 U.S.C. § 2319A.

(C) Retail Value Defined.—For purposes of this Application Note, the "retail value" of an infringed item or an infringing item is the retail price of that item in the market in which it is sold.

(D)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Amount in Cases Involving a Variety of

Infringing Items.—In a case involving a variety of infringing items, the infringement amount is the sum of all calculations made for those items under subdivisions (A) and (B) of this Application Note. For example, if the defendant sold both counterfeit videotapes that are identical in quality to the infringed videotapes and obviously inferior counterfeit handbags, the infringement amount, for purposes of subsection (b)(1), is the sum of the infringement amount calculated with respect to the counterfeit videotapes under subdivision (A)(i) (i.e., the quantity of the infringing videotapes multiplied by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ed videotapes) and the infringement amount calculated with respect to the counterfeit handbags under subdivision (B) (i.e., the quantity of the infringing handbags multiplied by the retail value of the infringing handbags).

(E) Indeterminate Number of Infringing Items.—In a case in which the court cannot determine the number of infringing items, the court need only make a reasonable estimate of the infringement amount using any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financial records.